

추가약정서

(법인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에 대한 추가약정용)

주식회사 하나은행 앞

20 년 월 일

채무자: (인)

주소:

채무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합니다.)과 약정한 20 년 월 일자 여신거래추가약정서(금액변경/기한연장/금리변경/조건변경용)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.

제 1 조 (목적)

이 약정서는 **채무자가 은행과 체결한 대출거래 약정의 기한연장시 채무자 명의로 보유중인 주택^(주1)이 1채를 초과하지 않으며 기한연장 후에도 1채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기** 위해 은행과 체결하는 추가 약정입니다.

주1) 주택 : 『주택법』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 및 재건축, 재개발, 지분(조합원 입주권) 등을 포함함

제2조 (주택보유수 제외 사유)

채무자 명의로 보유중인 주택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**채무자의 보유 주택수 산정시 보유수에서 제외하며 필요시 채무자는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**

- 매도계약이 기체결된 주택(*지자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접수한 경우 포함)
- 어린이집(영유아보육법)
-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경우(*단, 관할 지자체에서 『조세특례제한법』상 특례 인정 확인 날인을 받은 주택으로 한정)
-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(민간임대주택법)
-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인구감소(관심)지역 소재 주택(*단, 취득시 기준시가가 -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- 9억원, -그 외- 4억원 이하 이면서 수도권(접경지역인 인구감소지역 제외) 또는 광역시(군 제외)에 소재하지 않는 주택으로 한정)
- 문화재

제3조 (기한 전의 채무변제 의무)

다음의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**기한의 이익은 상실**하게 되고, 그에 따라 **본 대출을 변제할 의무**를 집니다.

- 기한연장 후에 채무자 명의로 보유중인 주택이 1채를 초과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
- 은행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및 위,변조 자료 등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는 경우

제4조 (기타)

채무자가 추가약정서(법인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에 대한 추가약정용)의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한 연장 약정을 할 수 없으며, 은행은 이를 안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